

학교법인우송학원 이사회회의록

이사정수	8인	재적이사	8인
감사정수	2인	재적감사	2인

1. 일시 : 2023년 10월 20일 12:00-13:00(회의소집 통보일 : 2023년 10월 10일)

2. 장소 : 학교법인우송학원 회의실(솔브릿지 12층 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참석 임원

-이사(6인) : 김종현, 김성경, 이달영, 고현석, 김태한, 조갑연

-감사(1인) : 이재하

○불참 임원

-이사(2인) : 이기재, 원종윤

-감사(1인) : 임성빈

○배석자 : 간사(남우현 법인 총무처장)

4. 안건 :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우송학원 업무분장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3) 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4) 명예이사장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우송유치원 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

(6) 대학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

(7) 대학 교직원 수당 등 개정에 관한 사항

5. 회의내용 :

-김종현이사장 :



이사 의결정족수 참석으로 부의안 결의에 대해 적법 성립되다.

의장석에 착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부의안 (1)호 내지 (7)호에 대하여 심의의결코저 한다고 말하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김종현이사장

부의안 (1)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사들에게 <정관 신규대조표>를 참고해달라고 말하고, 제안

<간서명>		
-------	---	---

사유와 변경 사항을 간사로부터 설명을 요구하다.

-간사:

최근 개정된 사립학교법 반영, 65세 경과자에 대한 산학협력부총장 등에 관한 임용 근거 마련 및 우송정보대학 직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관 변경에 대하여 설명하다.

(이사 전원 정관 변경 내용에 대하여 자료 검토하다.)

-김성경이사

사립학교법 개정사항을 우리 법인 정관에 반영하고 대학의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한 변경이기에 원안대로 승인하자고 제의하다.

-이달영이사, 김성경이사의 의견에 동의하고, 김태한이사 재청하다.

-이사전원

참석 이사 전원 다른 의견 없이 김성경이사의 제의에 찬성을 하다.

-김종현이사장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에 따라 부의안 (1)호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2) 우송학원 업무분장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김종현이사장

부의안 (2)호 안전인 <학교법인 우송학원 업무분장 규칙> 제정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제정 사유에 대한 설명과 이사들에게 자료 검토 요청하다.

-간사

법인내 총무처와 기획관리처 업무를 분장하는 <학교법인 우송학원 업무분장 규칙>제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다.

(이사 전원 우송학원 업무분장 규칙 내용에 대하여 자료 검토하다.)

-고현석이사

법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규칙 제정이니 원안대로 승인하자고 제의하다.

-조갑연이사, 고현석이사의 의견에 동의하고, 이달영이사 재청하다.

-이사전원

참석 이사 전원 다른 의견 없이 고현석이사의 제의에 찬성을 하다.

-김종현이사장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에 따라 부의안 (2)호인 <학교법인 우송학원 업무 분장 규칙> 제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3) 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김종현이사장

부의안 (3)호 안전인 <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 제정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규정 제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이사들에게 관련 자료 검토를 요청하다.

〈간서명〉	김종현	이달영
-------	-----	-----

-간사

법인내 상근임원인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 제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다.

(이사 전원 우송학원 상근임원 보수지급 규정에 대하여 자료 검토하다.)

-조갑연이사

상근 임원인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지급 기준을 정함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자고 제의하다.

-고현석이사, 조갑연이사의 의견에 동의하고, 이달영이사 재청하다.

-이사전원

참석 이사 전원 다른 의견 없이 조갑연이사의 제의에 찬성을 하다.

-김종현이사장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에 따라 부의안 (3)호인 <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 제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4) 명예이사장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김종현이사장

부의안 (4)호 안건인 <명예이사장에 관한 규정>변경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규정 변경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이사들에게 관련 자료 검토를 요청하다.

-간사

명예이사장 예우에 대한 <명예이사장에 관한 규정> 변경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다.

(이사 전원 규정 개정 내용에 대하여 자료 검토하다.)

-이달영이사

명예이사장에 대한 예우를 위한 변경이 주요 사항이므로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자고 제의하다.

-조갑연이사, 이달영이사의 의견에 동의하고, 고현석이사 재청하다.

-이사전원

참석 이사 전원 다른 의견 없이 이달영이사의 제의에 찬성을 하다.

-김종현이사장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에 따라 부의안 (4)호인 <명예이사장에 관한 규정> 변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5) 우송유치원 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

-김종현이사장

부의안 (5)호 안건인 <우송유치원 규칙 변경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규칙 변경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이사들에게 관련 자료 검토를 요청하다.

〈간서명〉	김종현이사장	이달영이사
-------	--------	-------

-간사

우송유치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우송유치원 규칙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이사 전원 우송유치원 규칙 변경 내용에 대하여 자료 검토하다.)

-김성경이사

우송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부 고시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규칙을 반영하여 유치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기에 원안대로 승인하자고 제의하다.

-고현석이사, 김성경이사 의견에 동의하고, 조갑연이사 재청하다.

-이사전원

참석 이사 전원 다른 의견 없이 김성경이사의 제의에 찬성을 하다.

-김종현이사장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에 따라 부의안 (5)호인 <우송유치원 규칙 변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6) 대학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 (우송대학교)

-김종현이사장

부의안 (6)호 안전인 <대학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우송대학교 교원 신규임용에 대한 제청이 있어 의결코저 한다고 말하고, 간사에게 교원 임용현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고, 이 사들에게 관련 자료 검토를 요청하다.

-간사

우송대학교에서 제청한 산학협력중점교원 신규임용에 대하여 설명하다.

(이사 전원 대학 교원 임면 내용에 대하여 자료 검토하다.)

-김태한이사

우송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자료를 검토하여 본바 산업체 전문분야에 업적이 있는 분들로 확인되며, 우송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분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학생교육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하다.

-조갑연이사, 김태한이사 의견에 동의하고, 이달영이사 재청하다.

-이사전원

참석 이사 전원 다른 의견 없이 김태한이사의 제의에 찬성을 하다.

-김종현이사장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에 따라 부의안 (6)호인 <대학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간서명>	김종현	김성경	이달영
-------	-----	-----	-----

구분	학(부)과	직위	성명	생년월일	계약기간	비고
신규 전임 교원	산학협력단	조교수 (비정년산학중점)	장은영	63.09.01	23.11.01 25.02.28	
	산학협력단	조교수 (비정년산학중점)	김방용	64.04.20	23.11.01 25.02.28	
	산학협력단	조교수 (비정년산학중점)	이창섭	65.11.22	23.12.10 26.02.28	

(7) 대학 교직원수당 등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김종현이사장

우송대학교와 우송정보대학의 규정 개정 요청이 있어 부의안 (7)호 안건인 <대학 교직원수당 등 규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결코저 한다고 말하고, 간사에게 규정 변경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다.

-간사

양 대학 일반직원의 어학수당, 지도수당 및 격려금 신설과 기타 수당과 관련된 특강료, 심사료, 회의비 등의 세부 지침 개정사항이 주요 내용인 <대학 교직원수당 등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이사 전원 규정 변경 내용에 대하여 자료 검토하다.)

-조갑연이사

간사의 설명대로 교직원들의 어학능력 및 복지향상, 기타수당 등의 지침 개정으로 학사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학의 제반절차를 거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기에 원안대로 승인하자고 제의하다.

-이달영이사, 조갑연이사 의견에 동의하고, 김성경이사 재청하다.

-이사전원

참석 이사 전원 다른 의견 없이 조갑연이사의 제의에 찬성을 하다.

-김종현이사장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에 따라 부의안 (7)호인 <대학 교직원 수당 등 개정에 관한사항>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6.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이사장이 본 건 이사회회의록 간서명에는 참석 임원 전원 또는 대표 3인을 선임하여 서명할 수 있다고 말한 뒤 본인과 김성경이사님, 이달영이사님을 간서명 대표로 할 것을 제의하자,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이사회회의록 간서명 대표 임원으로 본인과 김성경이사님, 이달영이사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

7. 폐회선언

이사장이 1호 내지 7호 안건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간서명>	김종현	김성경	이달영
-------	-----	-----	-----

2023. 1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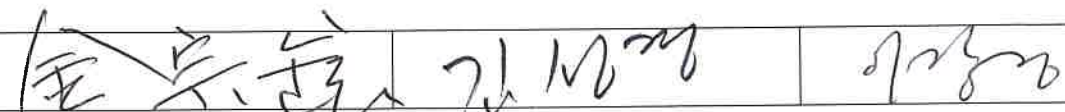
학교법인우송학원	이사장	김종현	金宗顯
	이사	김성경	金成敬
	"	이달영	이달영
	"	고현석	고현석
	"	김태한	金泰翰
	"	조갑연	조갑연
감사	이재하	이재하	이재하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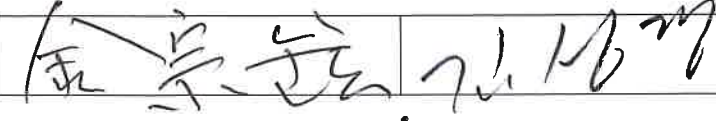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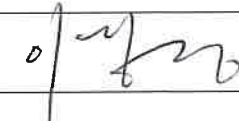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비고
<p>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⑧ (생략)</p> <p>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u>5년</u>이 경과한자</p> <p>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u>5년</u>이 경과한자</p> <p>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u>3년</u>이 경과한자</p>	<p>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①~⑧ (현행과같음)</p> <p>1. ----- ----- <u>10년</u> -----</p> <p>2. ----- <u>10년</u> -----</p> <p>3. ----- ----- <u>6년</u> -----</p>	<p>사립학교법 제21조</p>
<p>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u>3개월간</u>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 ----- ----- <u>1년간</u> ----- ----- ----- ----- ----- ----- ② (현행과 같음)</p>	<p>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p>
<p>제31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①평의원회는 <u>교원·직원 및 학생</u>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교원 3인</p> <p>2. 직원 3인</p> <p>3. <신설></p> <p>4. 학생 1인</p> <p>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u>4인</u></p>	<p>제31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① ----- <u>교원·직원·조교 및</u> ----- ----- ----- ----- ----- ----- ----- 1. 교원 3인</p> <p>2. 직원 3인</p> <p>3. <u>조교 1인</u></p> <p>4. 학생 1인</p> <p>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u>3인</u></p>	<p>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 (타대학 개정)</p>
<p>제31조의6(평의원의 임기) <u>평의원의 임기는 1년</u>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제31조의6(평의원의 임기) ①<u>평의원의 임기는 2년</u>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p> <p>②<u>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u> 하며, 본직 기간이 종료되면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p>	<p>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p>

<간서명>		
-------	--	--

현행	개정안	비고
<p>제47조(정년) ① (생략)</p> <p>② <u>산학협력부총장과 학사 및 특임부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u></p> <p>③ (생략)</p>	<p>제47조(정년)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산학협력부총장과 학사 및 특임부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65세가 경과된 자를 임용할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부총장 신규임용 및 정년연장</p>
<p>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u>교원징계위원회는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u></p> <p>② <u>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u></p>	<p>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u>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9명의 위원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1. <u>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u></p> <p>2.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p> <p>가. <u>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u></p> <p>나. <u>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u></p> <p>다. <u>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u></p> <p>라. <u>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u></p> <p>② <u>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u></p> <p>1. <u>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u></p> <p>2. <u>외부위원은 학교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u></p> <p>3. <u>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u></p> <p>4. <u>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u></p>	<p>사립학교법 제62조</p>
<p>제58조(징계의결의 기한) <u>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p>	<p>제58조(징계의결의 기한) -----</p> <p>-----</p> <p>----- 60일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 -----</p> <p>-----</p> <p>-----</p>	<p>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p>

<간서명> 

현행	개정안	비고
<p>제61조(징계의결) ① <신설> <제1항에서 5항을 제2항에서 6항으로></p> <p>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면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⑤ (생략)</p>	<p>제61조(징계의결)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제5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법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p> <p>② - - - - - - - 재적위원 - - -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 - - - 15일 - .</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사립학교법 제66조</p>
<p>제62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p>	<p>제62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 - - - - - - - - - - 3년을 - - - - -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해당하는 시효에 따른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 5년 2. 공금을 횡령한 경우 : 5년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0년</p>	<p>사립학교법 제66조의4</p>
<p>제79조(하부조직) 대학에 기획처(실), 교무처, 입학처, 학생복지처, 취업처, 산학협력단, 총무처, 관리처 등을 둘 수 있다.</p> <p><신설></p>	<p>제79조(하부조직) 대학에 교육혁신본부, 교무처, 입학처, 산학협력단, 총무처 등을 둘 수 있다.</p> <p>제113조(청렴의무 등) ①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시행일) ①이 정관은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p>	<p>대학 직제개편</p> <p>공무원 행동강령 준용</p>

<간서명>		
-------	--	---